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4
----------	-------

제출년월일 : 2025.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2025. 12. 31.)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용자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근거 법령 및 위원회 규정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자대상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다.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1조, 제6조)
- 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7. 10.~7. 30.(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

[성별영향평가결과]

관계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개선의견	<p>「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p> <p>따라서 일부조례개정안 제7조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단서 조항 추가 제안</p>
경제진흥과 의견	<p>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 추가 제안을 수용하기로 함.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p>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자를”을 “중소기업자로서,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운영”을 “기업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조개선”을 “구조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기업자”로, “기술개발자금의”를 “기술개발자금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중소기업자 육성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를 “기금 계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공무원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호선하고, 위원은 경제진흥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기금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 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자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금의 용자신청”을 “기금 용자 신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62조의17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중소기업의 <u>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u>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중소기업자</u>를 말한다.</p> <p>2.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u>기업운영에</u>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p> <p>3. “시설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u>구조개선</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 <u>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u> ----- ----- -----.</p> <p>제2조(정의) ----- -----.</p> <p>1. ----- ----- <u>중소기업자</u>로서, 중기업, 소기업 및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따른 <u>소상공인</u>을 -----.</p> <p>2. ----- ----- ----- <u>기업</u> <u>운영</u>-----.</p> <p>3. ----- ----- ----- <u>구조 개선</u></p>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생략)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

-----.

<삭 제>

제3조의2(존속기한) -----
- 2030년 12월 31일-----.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

1. 중소기업자 -----
- 기술개발자금을 위한 -----

2. 중소기업자 육성 및 지원-----

3. (현행과 같음)

② ----- 중소기업자-----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기금
계좌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회계법」----- 공
무원에 관한 규정 -----

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
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⑤ (생략)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경
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경제진흥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경제
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
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③ ~ ⑥ (생략)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금 소관 부서장을 당
연직으로 하며, 민간 경제단체 임
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자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
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
지와 같음)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

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

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

우

<신 설>

<신 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
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
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
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
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
청장이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
는 해당 금융기관에 위탁사무에 관
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
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용자금의 사용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
기업자가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
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5조에 따
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
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금융기관
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
다.

-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
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

----- 소속
공무원-----
-----.

제10조(용자금의 사용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기금 용자 신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미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및 시행규칙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위원회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허준필
연 락 처	02-3153-8576